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할 때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
2. 사고원인, 피해내역 등 사고현황
3. 긴급조치사항 등 대응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3(침해사고 후속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방법 및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 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통신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할 때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 2. 사고원인, 피해내역 등 사고현황 3. 긴급조치사항 등 대응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u><신 설></u>	제58조의3(침해사고 후속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방법 및 절차)

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4제3항”을 “법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법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6	750	1,500	3,000
별표 9 제2호어목부터 수목까지를 저목부터 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저목(중전의 어목) 및 처목(중전의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법 제48조의4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7	750	1,500	3,000
별표 9 제2호 비고 중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을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5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절차) ① -----
----- 법 제48조의4제6항-----

-----.

② 법 제48조의4제6항-----

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 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서.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법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300 (신설)	600 (신설)	1,000 (신설)
어.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 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 (현행과 같음)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6	750	1,500	3,000
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7	750	1,500	3,000
저. 법 제48조의4제6항----- ----- ----- -----	(현행 어목과 같음)	(현행 어목과 같음)	(현행 어목과 같음)	(현행 어목과 같음)

저. 법 제48조의4제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할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 해하거나 거부 또 는 기피한 경우				
처. ~ 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은 제 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 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처. 법 제48조의4제6	(현행 저	(현행 저	(현행 저	(현행 저
할-----	목과 같	저목	저목	저목
-----	음)	과 같	과 같	과 같
-----		음)	음)	음)

커. ~ 우. (현행 처목	(현행 처	(현행 처	(현행 처	(현행 처
부터 수목까지와	목부터	처목	처목	처목
같음)	수목까	부터	부터	부터
	지와 같	수목	수목	수목
	음)	까지	까지	까지
		와 같	와 같	와 같
		음)	음)	음)
비고: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1